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총196차-



[개최일시] 2022년 5월 18일(수) 16:00

[개회장소]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7명(정원 9명) / 감사 1명(정원 2명)

출석이사: Fr. 황경원, 오혜경, 심점섭, 정태호, 김명근, 김영주, Fr. 김동호 (7명)

출석감사: 이영규 (1명)

배석: 법인사무국 담당관7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1.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개정(안)
2.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안 상정 철회

제9호 의안 법인 「임원」 중임(안)-감사- 승인 요청의 건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보고1. 법인 산하 수탁시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

보고

보고2. 법인 산하 직영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부설 두레네공동생활

보고

보고3.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종결 보고

보고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인 업무 경과 보고

보고5. 법인 산하 수탁시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운영기간 연장 보고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황경원 인사 말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해 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점차 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하에 법인에서는 대면회의를 통해 임원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등에 반영하므로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오늘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등, 총9건의 상정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안내한바 있으나, 이중 제8호 의안의 경우, 임원분들의 동의를 구해 의안 상정을 철회하고자 하며 이를 제외한 각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고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전자 이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자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 -기본재산목록-변경(안)

▣ 변경 대상: 기본재산목록 변경(안)

▣ 변경 사유:

1. 당초 2002년부터 본 법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360 대 622㎡ 지상에 사랑손주간보호 센터 등(이하 '시설') 발달장애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음.
2. 그러나, 위 시설과 본 법인소유인 또 다른 부동산(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9-2 도로 178㎡)이 「사당2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당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음.

3.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규 시설을 재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장애인 부모회원님들도 재정착하기를 원하여, 조합 측과 협의하여(2016. 12.) 재건축단지 내에 재정착하기로 하여, 기존 시설과 도로 등을 대토하여,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22. 03. 07. 자로 조합 측으로부터 본 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중구청)에 취득보고를 하였음.
4. 층별 사용현황은 기계실 등(지4층),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지3층, 지2층), 사랑손주간보호센터(지1층)으로 활용하고 있음.

구분		현행	변경(안)	증가액
현금	1 소계		-))	-
부동산	1 소계		지하4층 노유 대지권 39062.8분의 4 전유부분 지3층 23 ² m ² 지2층 25 ² m ² 지1층 28 ² m ² 소 계 :	월 -
	합계 (①+②)	(③+④)	(①+②)	-

* 이하, 자료 참조.

법인 산하 직영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층별 현황

■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현 이용 인원	비고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90 지1층	○ 능	10명 (정원: 10명)	-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상동 지2층, 지3층	정	30명 (정원: 35명)	-

■ 층별 현황

시설명	구분	면적(m ²)	배치현황	비고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지1층	280.5798	식당, 휴게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

법인 산하 직영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층별 현황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지2층	2	32	사무실(원장실), 심신 회복실, 주방 및 식당, 상담실, 회의실 등	-
	지3층	2	14	적응 훈련실, 카페, 프로그램실, 휴게실, 창고 등	-
공 용	지4층	2	14	기계실, 집수정, 비상발전기 등	-

▣ 시설 사진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 「기본재산처분」 유형: 매각

▣ 「기본재산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손실보상액(추정)	비고
서울시 동작구	도로	14	:	-

→ 위 손실보상액은 3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가액임.

(단위: 원)

대한감정평가액	청구감정평가액	티앤비감정평가액	산술평균가액	비고
37,520,000	38,500,000	36,260,000	37,426,660	-

→ 위 청구감정평가액이 본 법인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며, 대상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은 19,726,000원 (1,409,000원/m²)임.

▣ 대상 부동산의 손실보상 대상 경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기준 사용현황	비고
1	서울시 동작구	대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00 대지 622	사무실(기숙사 네터, 그룹 라네)	-
2	상동	도로	178	현황 도로	-
3	상동	도로	14	현황 도로	-

- 위 부동산은 모두 故 이성순님께서 본 법인에 기증한 부동산이며, 1번과 2번 부동산은 지난 2016. 12. 경 그 주변지역의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으로 재건축단지 내 재정착하는 조건으로 당시 조합 측과 대토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4층 건물(무상)과 대지권(425.5536m²)을 취득하였음(2022. 03.).
- 금번 손실보상 대상인 3번 부동산은 1978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지정을 하였으며, 지정 당시 항공사진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3.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와 협의든, 수용재결이든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를 밟은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공용지로 등재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음.
4. 그러나, 위 부동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 놓고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약 40년만에 공공용지로 등재하기 위해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5. 본 법인의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로 편입하는 경우 재산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 당시 주택지였는가 여부, 당시 지목여부와 이용현황여부, 감정가액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6.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①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로 지정할 당시 이용현황은 도로였으며,
 - ② 이미 지목도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고,
 - ③ 부동산감정평가의 경우 편입할 당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본 법인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을 포함하여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가액이 거의 유사한 감정가액이 산출되었으며,
 - ④ 또한, 해당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인근 토지가액의 1/3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된 것임.
7. 이에, 위 손실보상액은 적절한 보상으로 사료되어 동작구청 측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바,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함.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② 이하 생략

※ 이하, 자료 참조.



사진		토지이용계획서	
<p>* 본 자료는 종명서의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며, 기본정보 일부 항목은 종명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토지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 토지이용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토지이용율 소유권변동 	<p>단위 : m²</p> <p>세 흔적</p> <p>지전</p>	<p>단위 : m²</p> <p>면적</p> <p>기준년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도로 도시철도 공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년월 	<p>기준년월</p> <p>2022년01</p>	<p>면적</p> <p>m²,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p>관련 법률 ※ 도로전용부지(도로전용부지)에 대한 첨증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법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 도권경비계획법></p>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차입금 현황

- 1997년 기증받은 토지에 사랑손주간보호센터 건물 신축시 법인으로부터 2억원 차입
- 차입금 중 1억3천만원 상환하고 7천만원의 잔액이 현재에 이른.
- 차입금 상환 방법으로 충북 제천과 강원 정선 토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을 약속함.

▣ 충북 제천 및 강원 정선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m ²)	금액	
			취득금액	2022년 공시지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1037	전	4,311 (1,310평)	49,000,000원 (평당: 약 37,000원)	71,562,600원 (평당: 54,630원)
강원도 정선군 방제리 60	전	1,363 (413평)	25,000,000원 (평당: 약 60,000원)	13,902,600원 (평당: 약 33,6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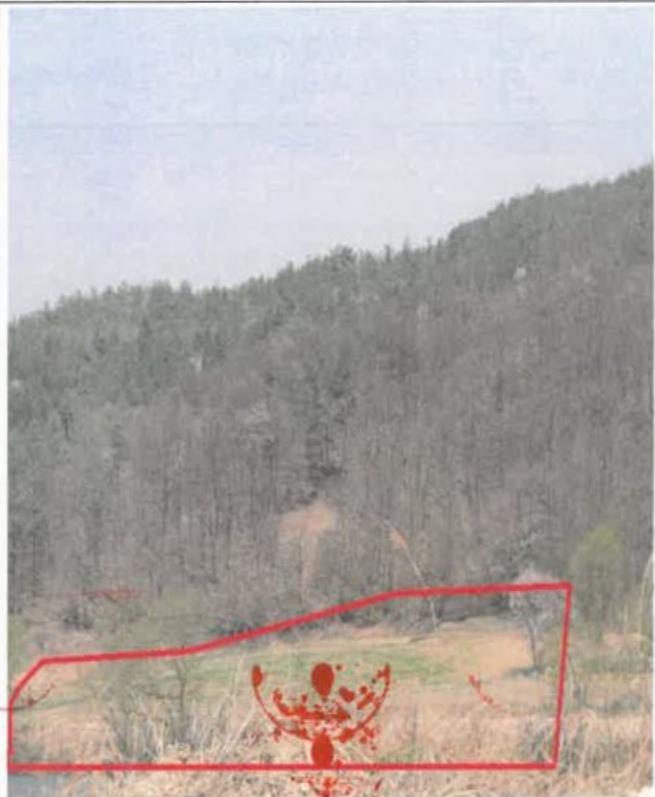
1. 토지 가격으로 매입함. 비싼
2. 토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고 있음.
3. 토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고 있음. 당시
법인 사장인 김민석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연세기사로 유학하고 있음.

▣ 차입금 탕감(시설) 및 대여금 대손(법인) 처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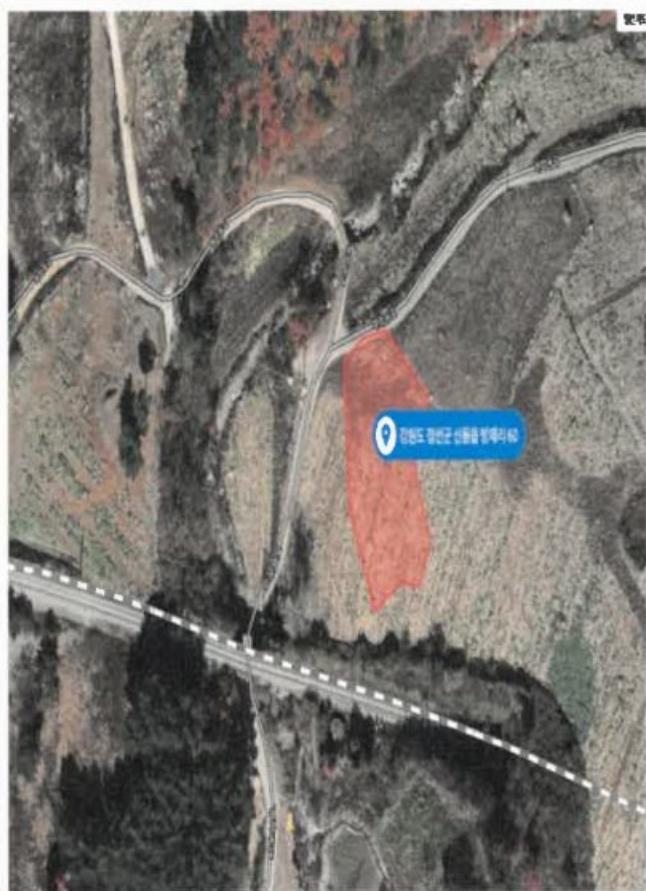
1. 사랑손주간보호센터에서는 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제천 토지는 태백선 철로와 하천부지에 인접해 있고 진입로가 없는 상황이며, 정선토지의 경우는 경사가 있으나 이웃토지의 현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태양광 사업을 위한 매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일괄 매입이 여의치 않아 무산되었음. 매각을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러 시설에서는 차입금 탕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2. 어려움 끝 상기식으로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내은 저마다는 것인 타당성을 것이라는 법인 내부 감사의 의견이 있었음. 없는

¶

제천 토지 현황



정선 토지 현황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1.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2.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제7차 개정(안)

◎ 의장 황경원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자료의 개정(안)은 정태호 이사님과 김영주 이사님, 김의석 법인 자문노무사님의 사전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하 각 개정(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 개정 경과

1. 2016년 3월 5일부터 법인 위탁운영 시행.
2. 1차 개정: 2017년 정기이사회(2017. 02. 23. 개최)
노인시설공통규정을 바탕으로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전면 개정
3. 2차 개정: 2019년 임시이사회(2019. 05. 16. 개최)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4. 3차 개정: 2019년 임시이사회(2019. 09. 30. 개최)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5. 4차 개정: 2020년 임시이사회(2020. 05. 14. 개최)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6. 5차 개정: 2021년 임시이사회(2021. 05. 25. 개최) 「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사유

1. 서울특별시에서 산하 전체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규정 점검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영규정 중 “서울시 보조금 지원 정원 기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인사규정」 제4장 보직	「인사규정」 제4장 보직	
제22조(보직원칙)	제22조(보직원칙)	[신설]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① 직원의 보직은 직무상 요구되는 자격과 개인의 자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가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군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① 직원의 보직은 직무상 요구되는 자격과 개인의 자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가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군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직원의 정원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 정원 기준에 따르며, 계약직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 할 수 있다.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에 따른 직원 정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도록 서울특별시로부터 요청받음.

2.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제7차 개정(안)

■ 제·개정 경과

- 제정: 2012년 임시이사회(2012. 06. 19.)
- 1차 개정: 2015년 임시이사회(2015. 05. 29. 개최) 일부 개정
- 2차 개정: 2015년 임시이사회(2015. 08. 28. 개최) 일부 개정
- 3차 개정: 2018년 임시이사회(2018. 10. 31. 개최) 일부 개정
- 4차 개정: 2018년 임시이사회(2018. 12. 21. 개최) 일부 개정
- 5차 개정: 2019년 임시이사회(2019. 10. 23. 개최) 일부 개정
- 6차 개정: 2020년 임시이사회(2020. 10. 28. 개최) 일부 개정

■ 개정 사유

- 서초구 지역 내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특별시에 주민 감사를 요청하였고,
- 관련 감사 실시 결과, 각 어린이집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내용 추가를 요청하여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함.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복무규정」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6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무규정」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6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신 설	<p>제56조의 1(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1명 이상 둔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요청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시립고덕양로원」 운영규정 개정(안),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 시설 현황

시 설 명	한빛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이 용 인 원	15명
관 할 지 자 체	양천구청	시 설 규 모	32.25㎡
소 재 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길 16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내 5층	시 설 소 유	양천구
시 설 신 고 일	2008년 9월 8일	법 인 전 입 금	-
운 영 현 황	<p>[운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및 상담 서비스 ■ 특별행사(생일행사) ■ 직원 연수 및 직무교육, 월례회의 <p>[운영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15명 어르신 이용 (2022년 기준)

▣ 추진 배경

1. 본 시설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2008년 9월 시설 신고 이후 한빛데이케어센터와 더불어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2. 방문요양센터의 과도한 난립과 과잉 경쟁 속에서 이용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서비스 이용 어르신이 평균인원 40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현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의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매년 이용 어르신 감소로 인해 수익금은 감소하고 있고, 직원의 인건비, 관리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어, 매년 이월금이 감소하고 있음.
4. 사회복지사 1명이 급여제공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요양보호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홍보 및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2017년~2021년 이용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명)

구분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기준
이용 어르신 (실인원 / 평균인원)		61 / 40	43 / 25	35 / 25	33 / 19	28 / 17	16 / 15
요양보호사 (실인원 / 평균인원)		61 / 36	37 / 23	30 / 22	20 / 16	22 / 13	13 / 12

* 2017년~2021년 재정 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기준
수 입		382,272	256,648	231,890	208,927	181,664	39,680
지 출		380,611	242,883	235,364	212,489	187,506	42,563
차 액		1,661	13,765	-3,474	-3,562	-5,842	-2,883
차년도 이월금		19,172	20,832	34,597	30,618	26,554	20,709

▣ 진행 과정

1. 매년 재정과 운영 상황 점검: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재정과 운영상황을 점검하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위해 노력함.

- 수익금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이용자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관련 지출 이외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영함.
- 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2021년 2분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행복품앗이사업단 운영의 어려움을 보고하였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사업단 운영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순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월금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테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21년 결산 및 평가 과정에서 수익금 적자 현상의 심화, 이용자어르신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통해 2022년 상반기 폐업을 결정하였고, 이후 2022년 1분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건강보험공단과 양천구청 질의를 통해 폐업 절차 확인 및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목동노인복지센터 관계자와 해당 시설 이용자어르신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치 관리 논의함.

▣ 폐업 사유

- 기관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용자 어르신 증가 및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월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는 매해 상승하고 있어 추후 이월금 소진 및 예산 적자가 예상됨.
- 이에 2022년 3월 31일자로 이용자어르신 및 요양보호사를 이관(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동노인센터)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료하며 2022년 6월 30일 자로 폐업하고자 함.

▣ 이용자어르신, 요양보호사 조치 계획

- 이용자어르신:** 이관 기관(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동노인센터)을 연계하여 이용자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 시 이관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15명 중 9명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동노인센터로 이관되었음. 15명 중 2명은 이관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며, 3명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타 센터로 이관 처리하였음.
- 요양보호사:**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의 의견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와 함께 이관 처리하였으며, 12명 중 9명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동노인센터로 이관되었고, 3명은 타 센터로 이관 처리하였음.

* 양천구 내 재가장기요양기관 125개소

사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근거하여 법인 회계로 전출 가능을 확인함.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그간 「행복품앗이사업단」을 이용한 이용자어르신과 돌봄에 최선을 다해준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폐업에 따른 제반 업무에 있어 만전(萬全)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직영·수탁시설은 총13개 시설이며, 해당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의 영유아복지 담당 직원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심 이사님과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이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의 회계기간: 3월~(의년 2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9조 제1항의 근거하여,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1년 예산(A)	2021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	2021년 예산(A)	2021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	
영유아 (13개)	수탁	도곡어린이집	1,216,510	1,207,260	9,250	99.2	1,216,510	1,207,260	9,250	99.2	4
	수탁	동화나라어린이집	1,348,500	1,321,625	26,875	98.0	1,348,500	1,321,625	26,875	98.0	12
	수탁	목동어린이집	1,154,211	1,121,591	32,620	97.2	1,154,211	1,121,591	32,620	97.2	16
	수탁	방배어린이집	483,373	481,091	2,282	99.5	483,373	481,091	2,282	99.5	25
	직영	베들레헴어린이집	329,768	324,749	5,019	98.5	329,768	324,749	5,019	98.5	29
	수탁	보미나어린이집	582,306	575,653	6,653	98.9	582,306	575,653	6,653	98.9	35
	수탁	서초3단지어린이집	510,063	506,262	3,791	99.3	510,063	506,262	3,791	99.3	40
	수탁	성모어린이집	357,801	357,338	463	99.9	357,801	357,338	463	99.9	46
	수탁	송화어린이집	530,085	524,513	5,572	98.9	530,085	524,513	5,572	98.9	52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2021년 예산(A)	2021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2021년 예산(A)	2021년 결산(B)	잔액(A-B)	집행율(%)
영유아	수탁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 린 이 집	528,108	523,350	4,758	99.1	528,108	523,350	4,758	99.1
	직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561,166	1,564,509	-3,343	100.2	1,561,166	1,564,509	-3,343	100.2
	수탁	한 빛 어 린 이 집	634,626	619,737	14,889	97.7	634,626	619,737	14,889	97.7
	수탁	해 뜨 락 어 린 이 집	399,296	388,855	10,441	97.4	399,296	388,855	10,441	97.4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6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7호 의안인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7호 의안인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사무국과 직영·수탁시설은 총44개(제1차:법인사무국 및 21개 시설 / 제2차:23개 시설)로써 본 의안 내용은 사회복지팀 각 복지분야 담당(관)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된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법인사무국 및 총 44개 시설	법인사무국 및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사무국 및 21개 시설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3개 시설
------------------------------------	--

◎ 상임이사 김동호: 먼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사무국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산하 직영·수탁시설 21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2022년 예산(A)	2022년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2년 예산(A)	2022년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7,918,664	8,708,530	789,866	10.0	7,918,664	8,708,530	789,866	10.0	83
종 합 (3개)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부설기관	3,842,100	4,100,595	258,495	6.7	3,842,100	4,100,595	258,495	6.7	84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179,895	2,263,765	83,869	3.8	2,179,895	2,263,765	83,869	3.8	87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984,000	4,495,000	511,000	12.8	3,984,000	4,495,000	511,000	12.8	88
영유아 (7개)	수탁	도곡어린이집	1,424,798	1,357,934	-66,864	-4.7	1,424,798	1,357,934	-66,864	-4.7	89
	수탁	목동어린이집	1,080,873	1,081,966	1,093	0.1	1,080,873	1,081,966	1,093	0.1	90
	수탁	방배어린이집	488,286	489,666	1,380	0.3	488,286	489,666	1,380	0.3	91
	수탁	보미나어린이집	672,481	673,659	1,178	0.2	672,481	673,659	1,178	0.2	92
	수탁	프란치스코어린이집	1,648,598	1,626,787	-21,811	-1.3	1,648,598	1,626,787	-21,811	-1.3	93
	수탁	한빛어린이집	665,553	656,945	-8,608	-1.3	665,553	656,945	-8,608	-1.3	94
	수탁	해뜨락어린이집	401,706	358,094	-43,612	-10.9	401,706	358,094	-43,612	-10.9	95
아동 (2개)	작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36,232	149,637	13,405	9.8	136,232	149,637	13,405	9.8	96
	작영	셋별지역아동센터	179,174	158,426	-20,748	-11.6	179,174	158,426	-20,748	-11.6	97
노인 (1개)	작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548,130	562,207	14,077	2.6	548,130	562,207	14,077	2.6	98
장애인 (7개)	작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88,177	422,781	34,604	8.9	388,177	422,781	34,604	8.9	99
	작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9,279	79,007	-272	-0.3	79,279	79,007	-272	-0.3	100
	작영	디딤자리	2,375,499	2,493,002	117,503	4.9	2,375,499	2,493,002	117,503	4.9	101
	작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65,183	263,866	-1,317	-0.5	265,183	263,866	-1,317	-0.5	102
	작영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422,271	426,661	4,390	1.0	422,271	426,661	4,390	1.0	103
	작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81,500	282,760	1,260	0.4	281,500	282,760	1,260	0.4	104
	작영	서로함께공동생활가정	106,810	112,350	5,540	5.2	106,810	112,350	5,540	5.2	105
노숙인 (1개)	작영	가톨릭사랑평화의집	114,916	273,612	158,696	138.1	114,916	273,612	158,696	138.1	106

◎ 상임이사 김동호: 이어서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23개 중 세부 설명을 요(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하 내용 및 '자료집'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면
			2022년차 추경예산(A)	2022년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22년차 추경예산(A)	2022년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종합 (2개)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257,495	2,306,995	49,500	2.2	2,257,495	2,306,995	49,500	2.2	110
	직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부설기관	4,302,754	4,381,202	78,448	1.8	4,302,754	4,381,202	78,448	1.8	111
아동 (1개)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67,348	280,600	13,252	5.0	267,348	280,600	13,252	5.0	114
노인 (4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4,979,131	5,061,203	82,072	1.6	4,979,131	5,061,203	82,072	1.6	115
	수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2,828,500	2,855,500	27,000	1.0	2,828,500	2,855,500	27,000	1.0	117
	직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부설기관	4,097,116	4,159,362	62,246	1.5	4,097,116	4,159,362	62,246	1.5	118
	수탁	고덕양로원	2,384,828	2,419,122	34,294	1.4	2,384,828	2,419,122	34,294	1.4	120
장애인 (13개)	수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575,078	578,727	3,649	0.6	575,078	578,727	3,649	0.6	121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74,025	75,370	1,345	1.8	74,025	75,370	1,345	1.8	122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16,874	424,324	7,450	1.8	416,874	424,324	7,450	1.8	123
	직영	사랑 손 직업적응훈련시설	488,157	490,867	2,710	0.6	488,157	490,867	2,710	0.6	124
	직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2,010,995	2,019,838	8,843	0.4	2,010,995	2,019,838	8,843	0.4	125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52,211	462,890	10,679	2.4	452,211	462,890	10,679	2.4	126
	직영	신망애의집	719,357	720,565	1,208	0.2	719,357	720,565	1,208	0.2	127
	직영	한우리보호작업장	1,648,600	1,650,000	1,400	0.1	1,648,600	1,650,000	1,400	0.1	128
	직영	햇빛자리	322,074	326,474	4,400	1.4	322,074	326,474	4,400	1.4	129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69,365	71,809	2,444	3.5	69,365	71,809	2,444	3.5	130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	100,076	102,222	2,146	2.1	100,076	102,222	2,146	2.1	131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712,707	720,572	7,865	1.1	712,707	720,572	7,865	1.1	132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72,504	271,819	-685	-0.3	272,504	271,819	-685	-0.3	133
여성 (3개)	직영	마음자리	1,063,073	1,072,323	9,250	0.9	1,063,073	1,072,323	9,250	0.9	134
	직영	벗들의의집	515,384	522,782	7,398	1.4	515,384	522,782	7,398	1.4	135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554,421	551,196	-3,225	-0.6	554,421	551,196	-3,225	-0.6	136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8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8호 의안은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인 요청 건이었으나, 해당 의안의 경우 추가 확인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금번 이사회에 의안 상정을 철회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장] 출석 이사에게 제8호 의안 철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특이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찬성으로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의안 상정이 철회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 법인 「임원」 -감사- 중임 (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감사-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제9호 의안인 법인 「임원」 -감사-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중임(안)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성명	비 고
김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 사무총장■ 카프성모병원 사무총장 <p>* 「감사」 예정 임기: 2022년 5월 18일 ~ 향후 2년</p>

[근거] 법인「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본 법인「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1항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개시된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9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 전원 원안 찬성으로 제9호 의안은 법인「임원」-감사-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 **의장 황경원**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하여 김동호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동호** : 보고 및 기타 사항으로 총5건의 보고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고 3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종결 보고

▣ 센터 현황

센 터 명 (센터장성명)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Fr. 김동호)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4호
설 립 일	2012년 3월 23일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탈북민) 및 사회적기업 소액 대출사업

▣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활동

1.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카사지센’)는 가톨릭교회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내 사업부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함.
2.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시장의 원리를 접목시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설립·지원·발전을 목표로 활동함.

▣ 사업 종결 사유

1. 카사지센은 2012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특화(종교계)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사업의 지원 대상을 종교계 내 다양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분할하기 위하여 공모 신청 자체를 자연시키게 됨.
2.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노동권을 갖지 못한 종사자들의 이탈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됨.
3. 또한 가톨릭에서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사업을 담당할 필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센터 잔여 업무

1. 소액대출사업 사후 관리

- 1) 소액대출사업: 카사지센에서는 취약계층 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로 선정되어 탈북민의 창업자금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함.
- 2) 소액대출사업 현황 (* 이하, 24면 표 참조)

대출연도	건수	대출금액 (원)	미상환 잔액 (원)	상환율 (%)	상환현황(건)		
					상환 완료	연체 중	정상 상환 중
2014년	4	80,000,000	6,996,014	91	3	1	상환기간 만료
2015년	3	70,000,000	0	100	3		
2016년	6	110,000,000	20,115,309	82	3	3	
2017년	6	110,000,000	26,167,317	76	2	1	
2018년	7	140,000,000	61,640,861	56	1	3	
2019년	7	130,000,000	88,723,785	32		1	
2020년	5	100,000,000	70,951,764	29			
합 계	38	740,000,000	274,595,050	63	12	9	17

- 3)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8명의 취약계층에 7억4천만원의 대출을 실행(상환기간 5년)하였고 현재 원리금을 상환받아 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반환 중임.
- 4)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사업이기에 연체 발생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았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출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1년부터 대출 사업을 중지함.
- 5) 장기 연체 및 채권 상각, 채권 수납 및 관리에 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여러 차례 방안을 건의하고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진흥원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함.

보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인 업무(진행·예정)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 시행)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및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시행시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법인 상시근로자수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1,488명(산하 시설 종사자 포함.)

3.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산업재해 중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준수사항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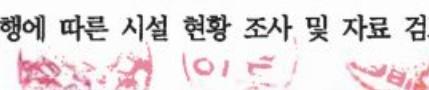
※ 핵심: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모든 자료를 서면화하여 관리.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내용

구 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부상 및 질병) 중대재해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법인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해당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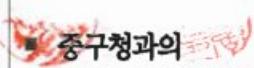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인 내 업무 진행 및 예정 사항

구 분	내 용
진행	1. TF팀 구성 [책임자] 법인 부회장  호 [구성원] 사회복지팀 5명(    )     최종          총괄         
	2. TF팀 역할  
	3. TF팀 진행 사항 1) 법인 산하시설 대상으로 '시설 안전 관리체계 점검' 현황 조사 실시 2) 법인 산하시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할 자체 안내 및 조치 내용 확인 조사 실시
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 이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에 있어 법인 산하시설 적용 필요성 및 보완 사항 등을 법인 자문노무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지원 (권한과 예산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 기타 : 노무사 자문 외 사회복지법인 등 유관 기관의 안전보건체계구축 현황 조사참고 예정

보고 5 법인 산하 수탁시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운영기간 연장 보고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협약 기간 연장 사유	위수탁 운영기간 종결일	관 할 지자체
유 락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 ■ 이용인원: 평균 월708명 ■ 종사자: 35명 (비정규직14명 포함) ■ 사업 내용: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호, 자활지원, 지역조 직화기능사업, 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p>중구청과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2017. 10. 01. ~ 5년간 (종료:2022. 09. 30.)</p> <p>* 최초수탁: 2000년 5월 2일</p>	<p style="text-align: right;">회 전</p> <p style="text-align: right;"> 및</p> <p>업무이관 등 저녁 쟁이 / ◎ 신녕종 합사회복지관 위탁종료(2022. 12. 31.) 에 맞추어 위수탁운영 행정업무 동시 추진</p> <p>▶ 본 법인은 중구청의 요청 사유와 관련 하여 특이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3개월 연장 운영 요청에 합의함.</p>	<p style="text-align: right;">■ 기준 종료일 : 2022. 09. 30. ↓</p> <p style="text-align: right;">■ 연장협의에 따른 종료일 : 2022. 12. 31. (3개월 연장)</p> <p style="text-align: right;">※ 연장 운영 기간 동안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p>	중구청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보고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어서, 의장은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운영에 있어 법인사무국의 안내(지침)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적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임원진의 법인에 대한 특별 당부 사항으로 최근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에서 아동학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법인사무국의 산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미스런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萬全)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다.

또한 의장은 이사님들과 감사님에게 각 의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고견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청하다.

의장은 금번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총196차)에 상정된 총8개 의안(당초 총9개 의안 중, 제8호 의안의 의안 상정 철회.),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손주간보호센터」 미상환 대여금 탕감 및 대손 처리(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행복품앗이사업단」 폐업(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6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 영유아복지시설 2021년 사업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9호 의안] 법인 「임원」 -감사-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폐회를 선언하다.

【안내】 2022년 제3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10월 19일(수) 16:00 천주교서울대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황 경 원

상임이사

김 동 호



이 사

심 점 섭



이 사

오 혜 경



이 사

김 명 근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영 주



감 사

이 영 규

